

의안번호	제 40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03
----------	-----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조례에 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후생복지 조례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나.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범위 규정 (안 제3조)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

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안 제4조~제5조)

-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함

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6조~제7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함

마.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9명 이내, 2년의 임기로 하며,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소집함

바.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제출
- 다. 합 의: 해당 없음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2.21. ~ 2020. 3.12.): 의견 1건 접수

* 의견제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관련조항	접수의견	검토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p>	<p>1. 조례의 핵심조항인 제7조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가 명시할 필요가 있음. (시행되는 내용들이 기존에 해왔거나 간헐적으로 보장하던 내용이며, 조례 제정의 의미만 있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통해 후생복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p> <p>2. 타 공무원 조직의 후생복지 조례와 비교해도 실질적 지원이 부족함.</p>	<p>제7조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구체적인 추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8조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영할 수 있음</p>

-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각종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생복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징계·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편의 시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위원은 교육감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비용 발생 요인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후생복지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기 시행): 19,586,414천원
 - 후생복지시설 운영 경비(기 시행): 876,100천원
 - 후생복지위원회 운영(신설): 1,840천원

3. 관련조문

- 안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안 제6조 ~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안 제8조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2020년 비용 소요 예상액
- 나. 추계결과: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108,648,030천원 소요
 - ※ 2020년(1차년도) 소요 예상액에서 매년 3% 추정치 반영
-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및 수익자 부담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기획국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0,464,354	21,078,284	21,710,632	22,361,951	23,032,809	108,648,030	
세 출	20,464,354	21,078,284	21,710,632	22,361,951	23,032,809	108,648,030	
1.맞춤형복지제도운영	19,586,414	20,174,006	20,779,226	21,402,603	22,044,681	103,986,930	
2.후생복지시설 운영	876,100	902,383	929,454	957,338	986,058	4,651,333	
가. 편의 시설	366,000	376,980	388,289	399,939	411,937	1,943,145	
나. 여가선용 시설	60,100	61,903	63,760	65,672	67,643	319,078	
다. 휴양 시설	450,000	463,500	477,405	491,727	506,478	2,389,110	
3.후생복지위원회 운영	1,840	1,895	1,952	2,010	2,070	9,767	
재원 조달	20,464,354	21,078,284	21,710,632	22,361,951	23,032,809	108,648,030	
의존 재원	소 계	20,098,354	20,701,304	21,322,343	21,962,012	22,620,872	106,704,885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20,098,354	20,701,304	21,322,343	21,962,012	22,620,872	106,704,885
	특별교부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366,000	376,980	388,289	399,939	411,937	1,943,145
	자체수입	366,000	376,980	388,289	399,939	411,937	1,943,145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참고자료] 2020년 소요비용 산출근거

구 분		소요비용 (단위:천원)	산출내역	비고
세 출		20,464,354		
맞춤형복지제도		19,586,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16,083,164천원 - 기간제교원 585,000천원 - 교육공무직원 2,918,250천원 	기 시행 사업
후생복지 시설	편의시설	36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직원식당, 어울림 카페 운영 등 ○ 사업대상: 교직원 	기 시행 사업
	여가선용 시설	6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직장동호회, 헬스키퍼 운영 ○ 사업대상: 교직원 	기 시행 사업
	휴양시설	4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휴양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시설 임차 지원 · 300천원, 50실, 30기 ○ 사업대상: 교직원 	기 시행 사업
후생복지위원회		1,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위원회 운영 ○ 사업대상: 후생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수당, 협의회 등 	신 설